

의안
번호

46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4. 1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소 형 준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465호

다. 제출일자 : 2025. 03. 28.

라. 회부일자 : 2025. 04. 10.

2. 제안이유

- 성북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비율별로 체계화하여 해당 조항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 마련과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규정 정비로 구민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이용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안 제5조)
- 나.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기준 비율별 체계화와 관련 용어 정비(안 제10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호)
- 마.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5조(시설의개방) 및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제2항, 제13조(사용자의 책임)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 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와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설치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함.
-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는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체육관 등 공공체육 시설을 대관할 경우,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유소년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입 감소는 2024년 대비 약 611만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존 복잡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비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개선함.

〈성북구체육회 등록된 유소년스포츠클럽 현황〉

구분	성북유소년FC	성북유소년야구단	성북구리틀야구단
소속	성북구축구협회	대한유소년야구연맹	한국리틀야구연맹
운영종목	축구	야구	야구
회원수	관내초등학생 약 170명	- 선수반 : 8명 - 취미반 : 45명	- 선수반 : 25명 - 취미반 : 40명

- 그 밖에 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호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체육관 등을 대관할 경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 확대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